

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(제11조 관련)

1.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

가. 대기오염물질

- 1) 황산화물
- 2) 먼지
- 3) 질소산화물

나. 수질오염물질

- 1) 유기물질
- 2) 부유물질

2.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오염물질등

가. 대기오염물질

- 1) 황산화물
- 2) 암모니아
- 3) 황화수소
- 4) 이황화탄소
- 5) 먼지
- 6) 불산화물
- 7) 염화수소
- 8) 질소산화물
- 9) 시안화수소

나. 수질오염물질

- 1) 유기물질
- 2) 부유물질
- 3) 카드뮴 및 그 화합물
- 4) 시안화합물
- 5) 유기인화합물
- 6) 납 및 그 화합물
- 7) 6가크롬화합물
- 8) 비소 및 그 화합물
- 9) 수은 및 그 화합물
- 10) 폴리염화비페닐(polychlorinated biphenyl)

- 11) 구리 및 그 화합물
- 12) 크롬 및 그 화합물
- 13) 페놀류
- 14) 트리클로로에틸렌
- 15) 테트라클로로에틸렌
- 16) 망간 및 그 화합물
- 17) 아연 및 그 화합물
- 18) 총 질소
- 19) 총 인